영 광 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군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022-68 2022. 8. 31.(수)

고 시

영광군 고시 제2022-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2

공 고

영광군 공고 제2022-909호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영광군 고시 제2022 - 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	잔여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130,185**	**130,185**	**7,884**	**122,301**		
경관보호구역	영광	불갑	모악	산2-2	130,185	130,185	7,884	122,301	불갑사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로 사용

3. 해제 연월일: 2022.08.31.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광군 산림공원과(☎061-350-5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고시도면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구적도

SCALE : 1 : 3,000

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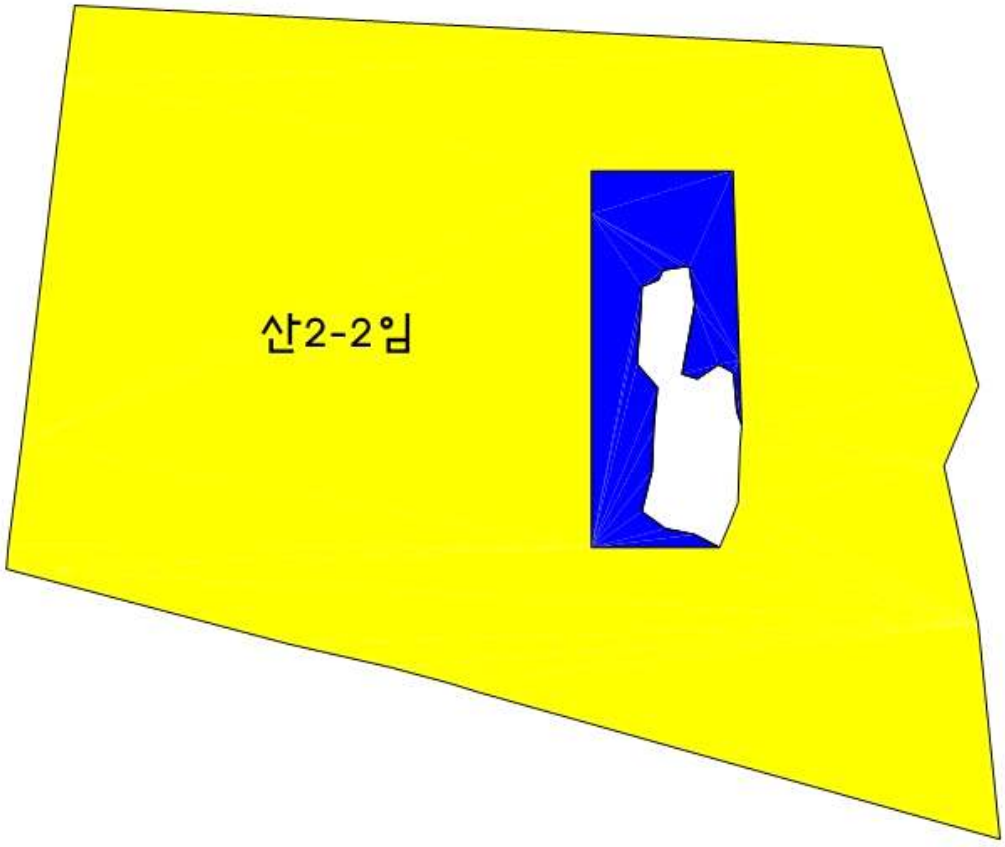

범 례	
해제대상지	
잔여대상지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적(㎡)	기 지정(㎡)	해제(㎡)	잔여(㎡)
불갑면 모악리 산2-2	임	130,185	130,185	7,884	122,301

영광군 공고 제2022-909호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정비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법률 및 기록물 관리 등 전문가 구성으로 심의의 전문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사항 등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 제명 변경 :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 집행기관, 운영부서, 처리부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조항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변경(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안 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 3)

○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함(안 제9조제1항)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 조항 신설(안 제3조)

-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함.(제3항)
-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순서를 정함.(제4항)

○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 및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운영세칙을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 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으로 통일

4.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8. 31. ~ 9. 20.(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종합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전화)061-350-5241 / FAX)061-350-559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종합민원실 담당자(전화 : 061-350-524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조례 및 규칙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의 견	관련 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 영광군의회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2.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광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광군수”를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영광군이”를 각각 “군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광군의”를 “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주관부서”를 “운영부서의”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종합민원실장
2. 총무과장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④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주관부서”를 “처리부서”로,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때에는 관계관에게”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법 제1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는 밝히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으로,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를 “우송 등에 소요되는”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50%”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50%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영광군 시행규칙 제 호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의 제목 “(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을 “(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군 정보공개 업무”로, “실과·직속기관·사업소”를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운영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양이 많은 부서로 정하고 수량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제순서가 빠른 부서로 정한다. 다

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안내 · 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을 “(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 창구에 군민이 편리하게”를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정보공개 청구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을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으로, “정보공개편람”을 “정보공개 편람”으로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영광군 정보공개조례」”로, “홈페이지, 군보”를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제공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운

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운영부서의 장”으로, “심의요구부서장”을 “심의요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심의회 의결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 및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등)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군 본청 및 읍·면(출장소 포함)사무소(이하“집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 영광군의회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2. “운영부서” 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광군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2. 영광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영광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4. 영광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생 략) 6. 영광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7. ~ 1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어느 하나에 ----------.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 ---------- 2.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3. 군이 ---------- 4. 군이 ---------- 5. (현행과 같음) 6. 군의 ---------- 7. ~ 12.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하나에 ----------.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제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종합민원실장 2. 총무과장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위원에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⑥ ----------

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운영부서의 ----------.
제7조 (회의등) ①·② (생 략)	제7조 (회의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 위원장은 ---------- 경우에는 ----------.
④ 심의회가 개최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출석으로 개의하고 ----------.
<신 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법 제1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는 밝히는 경우
제9조 (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제9조 (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 우송 등에 소요되는 ----------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 어느 하나에 -------

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0원 이하는 절사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 이 경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 (운영상황의 공표) 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상황의 공표) <삭 제>
<신 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영광군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처리부서” 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삭제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②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실과·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신 설>	제3조(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운영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② 군 정보공개 업무---------- ----------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으---------- ----------. 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

	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양이 많은 부서로 정하고 수량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제순서가 빠른 부서로 정한다. 다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안내 · 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읍면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 창구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
1. 정보공개청구서식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2.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정보공개 편람
제5조 (주요 정보목록 작성 · 비치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	<삭 제>

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 되어야하며,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에 포함된 사항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홈페이지, 군보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시기는 별표1과 같으며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거나 제외	제6조(정보의 공표) ① ---------- -- 「영광군 정보공개조례」---- ---------- ---------- ---------- ----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 제공하여야 --. <삭 제>

하고 공표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종합민원실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공표할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표할 부서의 실과소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실과소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안건상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제9조(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

자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구서를 심의회 개최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심의회 의결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합민원실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 심의요구 처리부서의 장----------.
제11조(운영세칙) 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 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 및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종합민원실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처리부서장)

1. 청 구 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담당부서 검토 의견		
5. 기 타		
첨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등 참고사항 부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

○ ○ 과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

□ 심의 안건

○

□ 이의신청일 : 20 . . .( )

□ 정보공개 이의 신청인

○ 성명 : 주소 :

□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

□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근거 및 사유

○

□ 그 동안의 처리과정

○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과 주장

1. 결정 내용

○

2. 결정에 대한 주장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관련)

의안 번호	제20 - 호

20 . . .( )

영광군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자료

영 광 군

정보공개심의회 자료

☐ 청 구 인

○ 성　명 :

○ 주　소 :

☐ 이의신청 경위

1. 정보공개청구
2. 처리부서 결정내용
3. 이의신청청구

☐ 이의신청 취지

○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 의견

○

○

☐ 심의사항

○

○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	제20 - 호	요구부서	
심의안건			
심의요지			
결정사항			

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영광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	위원장	결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참석위원	
안 건					
회의내용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

접 수		심 의 안 건	심 의		담당부서	비고
번 호	일 시		일 시	결 과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 2021. 12. 23.〕〔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20. 12. 22.]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 8. 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21. 6. 22.]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28.]